

- 2024년 톡톡팩토리 운영사업 - 톡톡팩토리 입주기업 모집 공고

청년(예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신산업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톡톡팩토리 운영사업」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청년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모집개요

□ 사업명 : 2024년 톡톡팩토리 운영 사업

□ 대상

- 7년 미만의 청년(예비)창업기업으로 톡톡팩토리 각 테마에 부합하는 제조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 톡톡팩토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
 -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 제4호에 의한 업종은 창업10년 이내 가능
 - ※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에 의한 청년연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 (1985.1.1. ~ 2007.12.31. 출생자)
 - ※ 공고일 기준 만나이 적용시 1985년 및 2007년 공고일 이전, 이후 출생자는 청년연령 구간에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출생자 소급적용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전체 명부 제출
 - ※ 동구점은 사업특성상 기업부설연구소 및 지점 이전 가능

□ 위치 및 모집 규모

지점	테마	호실	전용면적	입주월	위치
중구점	4차산업	503-1호	27.90㎡(8.44평)	2025년 1월	중구 종가로 362-11 (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5층
남구점	복합제조업	101호	47.55㎡(14.38평)		남구 돌길로 390번길 7
		102호	55.02㎡(16.64평)		
		203호	36.39㎡(11.01평)		
동구점	바이오 메디컬 및 일반제조	212, 215호	33.06㎡(10.00평) 63.49㎡(19.21평)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5, 미포회관 2층
북구점	스마트튜닝	1207, 1216호	호실당 약 27㎡(8평)	북구 진장유통로 16, 진장디플렉스 D동	
		1209~1211호			
		1192~1194호			
신규점	복합제조업	601호	호실당 약 76㎡(22평)	중구 종가6길 21 우정동 혁신타워 6층	
		602호			
		603호			
		604호			
		605호			

□ 현장사진



□ 지원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공간제공	- 창업공간 무상 임대지원
사업화 지원	- 마케팅, 멘토링,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등 (※ 단, 사업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입주 후 최장 5년(매년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

※ 입주기간 내에 창업 7년(신산업 10년) 및 청년연령 초과 등의 입주요건 위배사항 발생 시 차년도 입주 연장 불가(지원사업 종료 포함)

□ 기업부담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보증금	- 1,000,000원(퇴거 시 반환) ※ 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감시 퇴거 조치
관리비	- 전기료, 수도료 등 시설 사용에 따른 실비 자부담
협업체 회비	- 입주협업체 공동 경비(지점별 상이)
기 타	- 인터넷 사용료 등 기타 시설 및 각종 사업 추진 관련 비용 등

□ 입주일자 : 2025. 1월 중

2 신청자격 (요건 모두 충족)

□ 각 지점별 테마에 맞는 제조업 분야로 창업하여 사업공간이 필요한 기업

□ 사업자등록 7년 미만의 (예비)청년창업기업으로 제조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
단, 신산업 창업분야의 경우 10년 이내 ☞ 첨부3 참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대표자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인 기업

(단,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도 지원 가능)

※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에 의한 청년연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1985.1.1. ~ 2007.12.31. 출생자)

□ 톡톡팩토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

※ 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장소재지를 톡톡팩토리 입주 호실로 이전(등록) 필수

※ 이전 확인 불가할 경우, 퇴거 조치

□ 직접 개발하거나 디자인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단순 유통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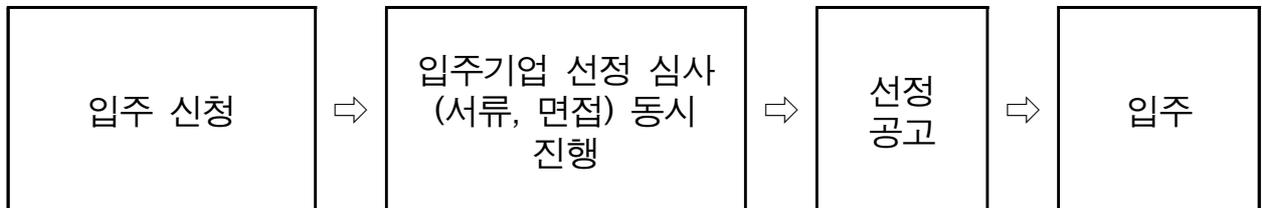
※ 입주제외 대상

1.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사람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사람
3. 폐수, 소음, 진동,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4. 입주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5. 고용보험 가입자
6. 4대보험 및 국·지방세 체납자
7. 최종 선정 후 계약일 기준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동일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
8. 기타 관리기관 및 수행기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심 사

○ 일 자 : 별도공지

○ 장 소 : 별도공지

○ 심사내용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 사업성 검토 및 면접 통합 심사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1. 1. ~ 11. 30. 까지

※ 필요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tlvus231@ubpi.or.kr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 문 의 : 창업혁신팀 (Tel. 052-283-7175, 052-283-7174)

□ 제출서류 ☞ 첨부 1. 입주신청서식 참조

연 번	제 출 서 류	비 고
1	톡톡팩토리 운영사업 입주신청서(첨부 1)	필수
2	톡톡팩토리 입주 운영계획서(첨부 1)	필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후관리 관련 의무사항 이행 동의서(첨부 1)	필수
4	대표자 이력서(첨부 1)	필수
5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한 달 이내 발급분)	필수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필수
7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적이 있는 자는 '폐업사실증명원' 각 1부 추가 제출	필수
8	10분 발표분량의 ppt(자유양식, 사업계획서 기준 작성)	필수
9	사업자등록증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필수)	해당 시
10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시
1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전체 명부	해당 시
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시
13	청년CEO육성사업 수수료증	해당 시
14	경력, 자격증, 지재권 등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제출서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타지역에서 울산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청년CEO육성사업 수수료창업자의 경우 가점

- 입주신청서에 제품개요 구체적으로 명시 ※ 입주신청서 '3. 입주기업 정보 - 제품개요'
- 해당 기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
- 공동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이력서 각 1부씩 제출
-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하게 창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퇴거) 조치함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자 수가 모집대상 수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면접심사는 대표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첨부 1 입주신청서식

접수
번호

2024 - -

지점

- 중구점 남구점
 동구점 북구점
 신규점(중구)

『톡톡팩토리 운영사업』 입주신청서

1. 대표자 정보

대표자명		생년월일	
청년CEO육성사업 수료여부(체크)	<input type="checkbox"/> 예 (기)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이메일주소	@
연락처	휴대폰	전화	팩스
주소			

2. 팀원 정보(있을 시 기재)

성명		이메일주소	@
연락처	휴대폰	전화	팩스

3. 입주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아이템			
제품개요	(사업 아이템 자세히 소개)		

『톡톡팩토리 운영사업』에 참여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신청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 (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톡톡팩토리 입주 운영계획서

1. 동기 및 사업추진

1-1 동기 및 사업추진역량

(입주 필요성, 입주 동기, 기술력, 자체 장비 보유, 사업역량 등)

1-2 사업추진 계획

(입주공간 활용 계획, 제품개발 및 사업화 목표, 창업 후 추진계획 등 기재)

※ 필요시 페이지 추가하여 작성

2. 추진 계획

2-1 제품의 개요	(제품의 시장성, 판로개척 방안, 대상고객, 고객층 분석 등)
2-2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분석	(수익전망 및 손익분기 예상시기 등)
2-3 인력 운용 계획	(사업화 성공에 따른 인력 채용 효과 분석 등)
2-4 마케팅 홍보계획	(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방법, 전략 등)

※ 필요시 페이지 추가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업체(또는 개인) 현황 및 지원신청내용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휴대전화),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및 첨부서류에 제공한 정보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한 관련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024년 12월 ~ 2029년 12월 특특팩토리 운영사업 : 접수/심사/선정/지원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최대5년)까지 보유되며, 제공된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제공

2024년 특특팩토리 운영사업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기타기관 한하여 제공·이용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정기관	울산광역시
기타기관	- 보도자료 배포를 위한 지방일간지 (경상일보, 울산매일신문,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등)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자금의 부정지출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3. 제공정보

업체(또는 개인) 현황 및 지원신청내용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휴대전화), 법인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및 첨부서류에 제공한 정보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한 기업 관련 정보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최대5년) 까지 보유되며, 제공된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함 동의안함

사후관리 관련 의무사항 이행 동의서

1. 사후관리 정보의 제공

지원 관련 실태 파악 조사

2. 사후관리 의무사항 성실히 이행

지원 실태 및 성과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지원성과 파악을 지원 재무제표 제출, 기타 자금지원 관련한 자료요청시 성실히 이행

본인은 상기 의무사항 성실히 이행을 동의함 — 동의함 동의안함

2024년 특특팩토리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하고 지원업체의 의무와 책임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_____ (인)

대표자 이력서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전화번호			
	E-mail			
학 력 사 항				
경 사 표 항				
비 고	<p>※ 기타 상별사항이나 특기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기재하여 주십시오.</p>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30.]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2022.6.29. 제정, 2024.1.30. 개정.]

중소벤처기업부(미래산업전략팀), 044-204-7683

[별표 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p>■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p> <p>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p>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지능형 로봇
⑧	스마트제조
⑨	시스템반도체
⑩	자율주행차
⑪	전기수소차
⑫	바이오
⑬	의료기기
⑭	기능성 식품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⑯	미래형 선박
⑰	재난/안전
⑱	스마트시티
⑲	스마트홈
⑳	신재생에너지
㉑	이차전지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㉔	우주
㉕	차세대 원전
㉖	양자
㉗	사이버 보안